

| | | | |
|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 | <h2 style="margin: 0;">유연학기제 및 융합·복수 전공에 관한 규정</h2> | 문서번호 | MSU- |
| | | 제정일자 | 2020. 04. 01 |
| | | 최종개정일자 | |
| | | 담당부서 | 교무입학처 |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10조, 및 30조의2, 30조의3에 의한 유연학기제 및 융합·복수 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유연학기제란 입학,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로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 운영

② 집중이수제는 4주, 8주, 15주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

③ 전공분야 이외에 제2의 영역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과 함께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복수전공

④ 융합전공이라 함은 본교에 개설된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에 포함된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전공

제3조(이수범위) ① 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학과의 복수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② 교원양성 관련학과, 보건·의료인 양성 관련학과, 정원 통제된 학과(분야) 학위취득은 제한한다.

③ 원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전공만 이수 가능하다.

제4조(신청절차) ① 학과에서는 융합, 복수전공 이수신청서[별지서식1]를 취합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무입학처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,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를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설) ① 융합 복수전공은 미래사회 수요분야 대비를 위한 융·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은 둘 이상의 학과(전공)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여야 하나, 하나의 학과(전공)가 사회의 수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접목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에 관련된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.

③ 1학기, 2학기에는 기존 전공수업 때문에 융합전공이나 복수전공은 여름학기, 겨울학기에 집중 이수제로 개설할 수 있다.

④ 융합 복수전공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.

제6조(운영) ① 융합 복수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 학과를 정하여야 하며, 융합 복수전공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교과목은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고 1학기, 여름학기, 2학기, 겨울학기 4개 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융합 복수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7조(이수교과목 및 학점) ① 학위취득을 위한 융합전공의 이수 학점은 복수전공의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과 동일하다.

② 복수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 인정하지 않는

다. 단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할 수 있다.

③ 36학점 이수 시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.

제8조(학위수여) ①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에 해당 주전공과 함께 학위를 수여한다.

②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융합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위를 수여한다.

제9조(중도포기) ① 복수융합전공 이수자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기간에 융합전공 이수포기원[별지서식2]을 작성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기 이수한 융합전공과정 중 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.

제10조(기타) 복수전공, 융합전공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